



# 시 보



제1638호 2024. 3. 25.(월)

## 고 시

- 목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발령----- 2

## 공 고

- 선거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 비용 공시--- 4
- 공인 등록 공고----- 5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통지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6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9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4
- 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20

회람							
----	--	--	--	--	--	--	--

목포시 훈령 제 853호

목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4년 3월 25일

## 목 포 시 장

### 목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 규정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을 “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 서류는 면허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한다.

1. 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운전경력 증명서 1통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지방경찰청발급) 1통
5. 건강진단서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급) 1통
6. 운전면허증 사본 1통
7. 기타 면허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목포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u></p> <p>제15조 (구비서류) <u>개인택시 면허발급 희망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다만, 모든 서류는 면허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신청서(소정양식) 1통</u></li> <li>2. <u>운전경력 증명서 1통</u> <u>발행자의 인감증명서 첨부(개인택시 면허발급용) 1통</u></li> <li>3. <u>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지방경찰청발급) 1통</u></li> <li>4. <u>건강진단서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급) 1통</u></li> <li>5. <u>삭제</u></li> <li>6. <u>삭제</u></li> <li>7. <u>운전면허증 사본 1통</u></li> <li>8. <u>기타 면허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u></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목포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처리규정</u></p> <p>제15조 (구비서류) <u>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목포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제출 서류는 면허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신청서(소정양식) 1통</u></li> <li>2. <u>운전경력 증명서 1통</u></li> <li>3. <u>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u></li> <li>4. <u>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지방경찰청발급) 1통</u></li> <li>5. <u>건강진단서 (국·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 발급) 1통</u></li> <li>6. <u>운전면허증 사본 1통</u></li> <li>7. <u>기타 면허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u></li> </ol>

##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 작성비용공시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목포시장 인

사본의 종류	일반사본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고
선거인명부	A4 1매당 100원	USB(16GB기준)복사분량 → 1개당 15,000원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선상투표신고인명부			

##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 공고

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 등록일 : 2024. 3. 18.(월)
3.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 인 명	인 영	규격, 서체	비 고
등록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출원인		2.0cm*2.0cm 푸른전남체	대중교통과 (03.18.등록)
등록	목포시교통사업특별회계지출원인		2.0cm*2.0cm 푸른전남체	전자이미지 (03.18.등록)

2024년 3월 20일

목 포 시 장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용당2·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통지”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21.

## 목 포 시 장

1. 공고대상: 112명 (붙임참조)
2. 공고기간: 2024. 3. 21. ~ 2024. 4. 4. (15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목포시 용당2·신촌1지구 조정금 통지 및 이의신청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061-270-3417, 811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공시송달 조서 1부.  
2. 조정금 이의신청서 1부. 끝.

## 『용당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 공시송달

번호	종리	지번	지목	면적 (㎡)	종리	지번	지목	면적 (㎡)	지분	부당 가치	조정내역				합계	지급	성명	주소	반송사유	
											증		감							
											면적 (㎡)	금액 (원)	면적 (㎡)	금액 (원)						
1	용당동	955-169	대	205.0	용당동	955-169	대	187.8	1	415,000.00	0.0	0	17.2	7,138,000	-7,138,000	김규우	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25번길 9, 104호 1801호 (신원동)	대문부처		
2	용당동	188-74	대	83.0	용당동	188-74	대	71.9	1	353,000.00	0.0	0	11.1	3,918,300	-3,918,300	김경순	광주광역시 서구 화개로 33, 203동 504호 (금호동, 용안면신서면역아파트)	대문부처		
3	용당동	1028-49	대	181.0	용당동	1028-49	대	177.3	1	789,000.00	0.0	0	3.7	2,919,300	-2,919,300	김준호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59 (대영동)	대문부처		
4	용당동	196-58	대	149.0	용당동	196-58	대	147.7	1	336,000.00	0.0	0	1.3	436,800	-436,800	김순호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50번길 53, 106호 (유동동, 한화캐슬그린아파트)	대문부처		
5	용당동	196-113	대	146.0	용당동	196-113	대	144.6	1	313,500.00	0.0	0	1.4	438,900	-438,900	김태경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등포로22 210호 202호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대문부처		
6	용당동	184-5	대	164.0	용당동	184-5	대	153.2	1	350,000.00	0.0	0	10.8	3,780,000	-3,780,000	김영삼	전라남도 목포시 안양산로 27 (용당동)	대문부처		
7	용당동	188-4	대	400.0	용당동	188-4	대	336.6	1	344,500.00	0.0	0	65.4	22,530,300	-22,530,300	김정규	전라남도 목포시 대학길 163 (대영동)	대문부처		
8	용당동	196-82	대	156.0	용당동	196-82	대	153.5	1	316,500.00	0.0	0	2.5	791,250	-791,250	김정훈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9, 105호 203호 (대영동, 부영아파트)	대문부처		
9	용당동	196-36	대	26.0	용당동	-	-	말소	1	116,500.00	0.0	0	26.0	3,029,000						
	용당동	196-39	대	33.0	용당동	-	-	말소	1	111,000.00	0.0	0	33.0	3,663,000						
	용당동	947-89	전	23.0	용당동	947-89	전	12.1	1	408,000.00	0.0	0	10.9	4,447,200						
	용당동	947-90	전	3.0	용당동	947-90	전	4.5	1	408,000.00	1.5	0	612,000	0.0	0					
10	용당동	187-1	대	238.0	용당동	187-1	대	180.3	1	296,500.00	0.0	0	47.7	14,143,050						
용당동	187-7	대	85.0	용당동	187-7	대	126.3	1	295,000.00	41.3	12,183,500	0.0	0		-6,237,050		노태환	전라남도 목포시 안양산로21번길 1-6 (용당동)	대문부처	
용당동	193-35	대	23.0	용당동	193-35	대	8.5	1	295,000.00	0.0	0	14.5	4,277,500							
11	용당동	196-74	대	163.0	용당동	196-74	대	159.3	1	370,000.00	0.0	0	3.7	1,369,000	-1,369,000	영기일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719-29, 107동 1504호 (석현동, 목포백현서원아파트)	대문부처		
12	용당동	955-160	대	152.0	용당동	955-160	대	129.1	1	464,500.00	0.0	0	22.9	10,637,050	-10,637,050	윤찬원	광기도 오사시 광기동로 24-41, 102호 204호(신광동)	대문부처		
13	용당동	947-86	전	120.0	용당동	947-86	전	144.2	1	455,500	24.2	11,023,100	0.0	0						
	용당동	947-113	대	122.0	용당동	947-113	대	128.8	1	464,500	6.8	3,158,600	0.0	0		-22,162,300		빅미국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40-24, 510호 1701호 (석현동, 리움센트럴파크5차아파트)	대문부처
	용당동	947-123	대	180.0	용당동	947-123	대	141.5	1	944,000.00	0.0	0	38.5	36,344,000						
14	용당동	190-32	대	118.0	용당동	190-32	대	111.5	1	509,500.00	0.0	0	6.5	3,311,750	-3,311,750	박수석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91-11호 810호 (대서동, 현대신원아파트)	대문부처		
15	용당동	196-9	대	155.0	용당동	196-9	대	147.1	1	313,500.00	0.0	0	7.9	2,476,650	-2,476,650	박정호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196-9	대문부처		
16	용당동	1005-43	전	158.0	용당동	1005-43	전	146.8	1	353,000.00	0.0	0	11.2	3,953,600	-3,953,600	박종갑	신안군 광덕면 영곡리 93-2	주소불명		
17	용당동	957-23	대	96.0	용당동	957-23	대	93.2	1	557,000.00	0.0	0	2.8	1,559,600	-1,559,600	백계성	전라남도 목포시 백련대로73번길 4 (용당동)	대문부처		
18	용당동	196-77	대	194.0	용당동	196-77	대	177.2	1	326,500.00	0.0	0	16.8	5,485,200	-5,485,200	서경순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86번길 25-3 (용당동)	대문부처		
19	용당동	188-9	대	271.0	용당동	188-9	대	259.7	1	326,500.00	0.0	0	11.3	3,333,500	-3,333,500	서영재	전라남도 목포시 백련대로 1-47, 103동 103호 (용당동, 용태동광진파크그라운드)	대문부처		
20	용당동	955-78	대	99.0	용당동	955-78	대	90.7	1	394,000.00	0.0	0	8.3	3,270,200	-3,270,200	오미라	전라남도 목포시 고대로64번길 16-2 산정동	대문부처		
21	용당동	955-176	대	165.0	용당동	955-176	대	164.2	1	503,000.00	0.0	0	0.8	402,400	-402,400	유갑순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0번길 20 (용당동)	대문부처		
22	용당동	191-21	대	226.0	용당동	191-21	대	197.5	1	332,000.00	0.0	0	28.9	9,462,000	-9,462,000	윤진숙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60번길 13-2 (용당동)	대문부처		
23	용당동	197-30	전	253.0	용당동	197-30	전	241.9	1	286,500.00	0.0	0	13.1	3,180,150	-3,180,150	이영복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2, 101호 1703호 (대서동, 목포대영캐슬아파트5차아파트)	대문부처		
24	용당동	196-91	대	135.0	용당동	196-91	대	129.7	1	317,500.00	0.0	0	5.3	1,682,750	-1,682,750	정호순	전라남도 목포시 고대로2번길 20-2 (용당동)	대문부처		
25	용당동	947-176	전	3.0	용당동	-	-	말소	1	483,000.00	0.0	0	3.0	1,449,000	-1,449,000	조복동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동 955-61	대문부처		
26	용당동	188-119	대	134.0	용당동	188-119	대	130.8	1	310,500.00	0.0	0	3.2	993,600	-993,600	조유진	전라남도 해남군 송기면 내정리 264-9	이사불명		
27	용당동	196-44	전	3,339.0	용당동	196-44	전	2,661.8	1/4	183,500.00	0.0	0	67.2	31,066,550	-31,066,550	최광순	안원동향사 마을중구 마추출대로 442 (용당동)	대문부처		
28	용당동	196-44	전	3,339.0	용당동	196-44	전	2,661.8	1/4	183,500.00	0.0	0	67.2	31,066,550	-31,066,550	최광순	안원동향사 마을중구 마추출대로 442 (용당동)	대문부처		
29	용당동	957-18	대	144.0	용당동	957-18	대	134.0	1	474,500.00	0.0	0	10.0	4,745,000	-4,745,000	최홍남	전라남도 목포시 백련대로73번길 6 (용당동)	대문부처		
30	용당동	196-137	대	45.0	용당동	-	-	말소	1	128,500.00	0.0	0	45.0	5,782,500	-5,782,500	최창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봉곡로 355, 104호 105호 (봉곡아파트)	대문부처		
31	용당동	1003-13	대	112.0	용당동	1003-13	대	115.4	1	332,000.00	3.4	1,128,800	0.0	0	1,128,800		강성구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76번길 7 (용당동)	대문부처	
32	용당동	196-103	대	226.0	용당동	196-103	대	237.4	1	305,000.00	11.4	3,477,000	0.0	0	3,477,000		고승숙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86번길 11-2 (용당동)	대문부처	
33	용당동	189-1	대	142.0	용당동	189-1	대	209.3	1	332,500.00	67.3	22,277,250	0.0	0	22,277,250		권순기	광주광역시 북구 삼동로24번길 8, 501호 (용당동, 여락면안)	대문부처	
34	용당동	188-116	대	91.0	용당동	188-116	대	98.5	1	482,000.00	7.5	3,615,000	0.0	0	3,615,000		권오성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60번길 4 (용당동)	대문부처	
35	용당동	955-229	대	134.0	용당동	955-229	대	143.3	1	418,000.00	9.3	3,887,400	0.0	0	3,887,400		김영석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0번길 25-3 (용당동)	대문부처	
36	용당동	188-86	대	152.0	용당동	188-86	대	206.8	1	319,500.00	54.8	17,508,600	0.0	0	17,508,600		김대현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70번길 200 (용당동)	대문부처	
37	용당동	1028-20	대	164.0	용당동	1028-20	대	169.8	1	519,500.00	5.8	3,013,100	0.0	0	3,013,100		김대현	광주광역시 서구 삼우면로 120, 206동 170호 (용당동, 용안면신서면역아파트)	대문부처	
38	용당동	955-177	대	168.0	용당동	955-177	대	121.5	1	550,000.00	13.5	7,425,000	0.0	0	7,425,000		김미경	전라남도 목포시 백련대로83번길 7-8 (용당동)	대문부처	
39	용당동	196-67	대	104.0	용당동	196-67	대	176.3	1	329,000.00	12.3	4,046,700	0.0	0	4,046,700		김미서	광기도 화서시 당항동 155-2, 2호 302호 (당항동)	대문부처	
40	용당동	196-4	대	104.0	용당동	196-4	대	131.3	1	325,000.00	27.3	8,872,500	0.0	0	8,872,500		김상진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70번길 12-6 (용당동)	대문부처	
41	용당동	188-133	대	136.0	용당동	188-133	대	139.3	1	312,000.00	3.3	1,029,600	0.0	0	1,029,600		김상성	전라남도 신안군 차치면 죽림리 157-9	이사불명	
42	용당동	196-68	대	105.0	용당동	196-68	대	109.9	1	332,000.00	4.9	1,636,800	0.0	0	1,636,800		김성성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170번길 12-5 (용당동)	대문부처	
43	용당동	181-5	전	333.0	용당동	181-5	전	346.1	166.5/333	504,000.00	13.1	3,301,200	0.0	0	3,301,200		김영호	광주광역시 북구 영암로 31, 101호 903호 (연희동, 엘스테이트연희)	대문부처	
44	용당동	955-41	대	184.0	용당동	955-41	대	214.8	10/52	583,500	20.8	3,456,110	0.0	0	6,541,920		김연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북로 517, 104호 (용당동, 중랑신원아파트)	대문부처	
	용당동	955-42	대	188.0	용당동	955-42	대	215.5	10/52	583,500	27.5	3,085,810	0.0	0	0					
45	용당동	1028-42	대	126.0	용당동	1028-42	대	128.4	1	871,000.00	2.4	2,090,400	0.0	0	2,090,400		김연진	광기도 김포시 유원로 215, 207동 2003호 (용당동, 용무면신원부부리주요)	대문부처	
46	용당동	181-5	전	333.0	용당동	181-5	전	346.1	166.5/333	504,000.00	13.1	3,301,200	0.0	0	3,301,200		김우성	광주광역시 서구 용암동 76, 103동 702호 (용당동, 남양현대아파트)	대문부처	
47	용당동	1028-51	대	162.0	용당동	1028-51	대	177.6	1	828,000.00	15.6	12,916,800	0.0	0	12,916,800		김준자	전라남도 목포시 백련대로 107 (용당동)	대문부처	
48	용당동	955-123	도로	8.0	용당동	955-123	도로	8.4	1	132,500.00	0.4	53								

#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통지 공시송달

번호									지분	㎡당 가격	조정내역				합 계	소유자		변송사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증		감			성명	주소		
											면적 (㎡)	금액 (원)	면적 (㎡)	금액 (원)					
1	용당동	972-63	대	190.0	용당동	972-63	대	185.1	1	382,500	0.0	0	4.9	1,874,250	-1,874,250	박공심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2번길 4 (용당동)	폐문부재	
2	용당동	972-179	대	46.0	용당동	972-179	대	36.7	1	333,500	0.0	0	9.3	3,101,550	-3,101,550	박덕보라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9번길 17 (용당동)	폐문부재	
3	산정동	1040-198	대	50.0	산정동	1040-198	대	46.8	1	458,500	0.0	0	3.2	1,467,200	-1,467,200	박인갑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 22-2	폐문부재	
4	산정동	1040-136	대	50.0	산정동	1040-136	대	38.0	1	331,000	0.0	0	12.0	3,972,000	-3,972,000	서우열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6번길 5 (산정동)	폐문부재	
5	용당동	972-95	대	116.0	용당동	972-95	대	106.1	1	337,000	0.0	0	9.9	3,336,300	-3,336,300	안정래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21-2 (용당동)	폐문부재	
6	산정동	1040-197	대	53.0	산정동	1040-197	대	47.0	1	458,500	0.0	0	6.0	2,751,000	-2,751,000	이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나길 6, 302호 (홍제동, 만민하늘애)	폐문부재	
7	용당동	972-6	대	136.0	용당동	972-6	대	128.2	1	344,000	0.0	0	7.8	2,683,200	-2,683,200	전영희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552-8, 101동 906호 (회정동, 금용아파트)	폐문부재	
8	산정동	1040-182	대	36.0	산정동	1040-182	대	34.4	1	297,000	0.0	0	1.6	475,200	-475,200	전하니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4번길 8-1 (산정동)	폐문부재	
9	산정동	1040-124	대	50.0	산정동	1040-124	대	48.3	1	288,500	0.0	0	1.7	490,450	-490,450	정대관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6번길 5-4 (산정동)	폐문부재	
10	용당동	964-88	대	96.0	용당동	964-88	대	85.0	1	371,500	0.0	0	11.0	4,086,500	-4,086,500	최윤열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1291-1	폐문부재	
11	용당동	972-22	전	53.0	용당동	972-22	전	64.1	2/5	340,500	11	₩3,745,500		8,403,480		강영구	전남 목포시 산정로 225 (용당동)	폐문부재	
		972-38	대	20.0		972-38	대	40.7	2/5	340,500	20.7	₩7,048,350							
		972-40	대	66.0		972-40	대	55.5	2/5	820,000		10.5	₩8,610,000						
		972-136	대	59.0		972-136	대	40.6	2/5	340,500		18.4	₩6,265,200						
		972-142	전	42.0		972-142	전	26.0	2/5	340,500		16	₩5,448,000						
		972-163	대	41.0		972-163	대	78.2	2/5	820,000	37.2	₩30,504,000							
12	산정동	1040-111	대	33.0	산정동	1040-111	대	37.0	1	290,500	4.0	1,162,000	0.0	0	1,162,000	기현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루111번길 38, 7동 1503호 (만수동, 신동아아파트)	폐문부재	
13	산정동	1040-83	대	79.0	산정동	1040-83	대	80.4	1	334,500	1.4	468,300	0.0	0	468,300	김영희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4번길 3-1 (산정동)	폐문부재	
14	용당동	964-155	대	217.0	용당동	964-155	대	214.1	1	448,000			2.9	1,299,200	2,553,600	김종갑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읍동길 30-37	폐문부재	
	용당동	964-156	대	95.0	용당동	964-156	대	103.6	1	448,000	8.6	3,852,800	0.0	0					
15	용당동	964-86	대	204.0	용당동	964-86	대	224.6	1	543,500	20.6	11,196,100	0.0	0	11,196,100	김형단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진매을길 22-5	폐문부재	
16	산정동	1040-58	대	96.0	산정동	1040-58	대	103.7	1	298,000	7.7	2,294,600	0.0	0	2,294,600	박은숙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2번길 7-1 (산정동)	폐문부재	
17	산정동	1040-151	대	46.0	산정동	1040-151	대	56.1	1	332,500	10.1	3,358,250	0.0	0	3,358,250	설금희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20번길 7-2 (산정동)	폐문부재	
18	산정동	1040-62	대	79.0	산정동	1040-62	대	88.0	1	331,000	9.0	2,979,000	0.0	0	2,979,000	오복래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6번길 8-1 (산정동)	폐문부재	
19	용당동	964-190	대	124.0	용당동	964-190	대	125.7	1	514,000	1.7	873,800	0.0	0	873,800	윤민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7번길 29, 402호 (대흥동)	폐문부재	
20	산정동	1040-109	대	63.0	산정동	1040-109	대	84.7	1	474,500	21.7	10,296,650	0.0	0	10,296,650	윤정도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 16 (산정동)	폐문부재	
21	산정동	1040-584	전	87.0	산정동	1040-584	전	120.0	1	328,000	33.0	10,824,000	0.0	0	10,824,000	이건충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6번길 9 (산정동)	폐문부재	
22	산정동	1040-76	대	66.0	산정동	1040-76	대	69.8	1	331,000	3.8	1,257,800	0.0	0	1,257,800	이영남	전라남도 목포시 영태면 포도길 40-9	폐문부재	
23	산정동	1040-184	대	40.0	산정동	1040-184	대	45.1	1	297,000	5.1	1,514,700	0.0	0	1,514,700	이정남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6번길 1-1 (산정동)	폐문부재	
24	용당동	972-9	대	233.0	용당동	972-9	대	235.3	1	336,000	2.3	772,800	0.0	0	772,800	이태곤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2번길 16	폐문부재	
25	산정동	1040-180	대	36.0	산정동	1040-180	대	40.1	1	300,000	4.1	1,230,000	0.0	0	1,230,000	이른미	경기도 김포시 철포로 60, 309동 1403호 (철포동, 한강메트로자이3단지)	폐문부재	
26	용당동	964-90	대	36.0	용당동	964-90	대	45.2	1	365,500	9.2	3,362,600	0.0	0	3,362,600	전준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80길 55, 402호 (수유동, 테슬라비벌아파트)	폐문부재	
27	산정동	1040-165	대	73.0	산정동	1040-165	대	77.1	1	339,000	4.1	1,389,900	0.0	0	1,389,900	최균순	전라남도 목포시 신촌로16번길 3-1 (산정동)	폐문부재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5.

### 목 포 시 장

####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개정 내용 중 조례 위임사항을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
  - 감면 대상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개정)
    - (현행) 사회복지시설 ‘일부’ (양로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센병 요양시설) → (개정) ‘전체’ 사회복지시설
  - 감면을 차등 적용
    - (현행) 재산세 100% 감면(법정) → (개정) 유료시설 25%, 무료시설 50% 감면

- 재산세 추가 감면율 조례 위임(안 제3조) (신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항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 재산세 50% 추가 감면

※ 조례 개정 후 감면율

구분		감면율			
		개정 전	개정 후		
		법정	법정	조례 위임	적용감면율
사회복지법인		100%(면제)	100%	(해당없음)	100%
사회복지시설	유료	100%(면제)	25%	50%	75%
	무료	100%(면제)	50%	50%	100%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4. 3. 25. ~ 4. 15. (21일)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 <삭제> <삭제 2022. 4. 11.> 1. 삭제 2. 삭제	제3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25.

### 목 포 시 장

#### 1. 개정 이유

-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舊증가산금) 면제대상 납세고지별·세목별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납부지연가산세(舊증가산금)가 면제되는 기준이 4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반우편의 송달기준 상향(안 제5조1항)
  - (현행) 부과세액 30만원 미만 → (개정) 45만원 미만
- 서류 송달의 방법 근거 법령 정비(안 제5조제2항)
  - (현행)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 (개정)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서류송달의 방법)

6.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감사실)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대상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여성가족과) : 해당 없음

7. 예산사항 : 해당 없음

8. 입법예고 : 2024. 3. 25. ~ 4. 15. (21일)

9. 사전협의(승인) 사항 : 해당 없음

10.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5일까지 목포시장(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처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용당동) 목포시청 세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3580), 직접방문 등

## 11.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1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 입 법 예 고

「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일

## 목 포 시 장

### 1. 제정이유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2. 주요내용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해당없음
- 규제심사(심의) 여부(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가족과) :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 완료

#### 7. 규칙(안) : 붙임

#### 8. 입법예고 기간 : 2024. 4. 1. ~ 2024. 4. 21.(21일간)

#### 9.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기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58724] 전남 목포시 수문로 32(남교동),  
트윈스타행정타운 4층 기후환경과

#### 10.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02, FAX 270-3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목포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3.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주 소 : \_\_\_\_\_

○ 전 화 번 호 : \_\_\_\_\_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